

의안번호	2203046
의 퇴 인	진선미 의원
회 답 일	2024.09.06.
추계번호	24C3018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조의2 (우수 현장실습 산업체의 선정)	(제1항)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을 위해 현장실습 환경의 안전성, 현장실습 요건 및 취업 연계성, 직무분야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2항) 제1항에 따른 우수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기준과 절차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8조의2 (우수 현장실습 산업체의 선정)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으로 하여금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을 위해 우수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 '24년 현재 직업계고 현장실습¹⁾은 사전 현장실사와 시·도교육청 현장실습 협의체 또는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선도기업'과 '참여기업'에서만 가능²⁾

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2) 2024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공통 매뉴얼

- 이 중 ‘선도기업’은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기업 중 관할 교육청의 심의를 통해 우수한 실습 여건을 갖추었음을 인정받은 기업이며, 그 외의 기업은 ‘참여기업’임
- 개정안의 제안이유 등을 고려할 때 ‘우수 현장실습산업체’는 현행 ‘선도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표 1] 선도기업과 참여기업의 비교

구분	선도기업	참여기업
인정 주체	시·도교육청	학교
선정 절차	현장실사→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시·도교육청 현장실습 협의체 심의	현장실사 →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심의
현장실습 운영기간	1주(5일) ~ 3개월(60일)	
사전 현장실사	필수	
학생 순회지도	필수	
노무사 기업 코칭	필수	선택
취업전환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단, 4주(실습일 기준 20일) 이상의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참여 후	3학년 겨울방학 시작 이후 또는 다음 해 1월 1일 이후

자료: 2024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공통 매뉴얼

- 참고로 교육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시도별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선도기업은 총 8,580개소임('24.8. 현재)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에 대해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의 지원이 추가로 실시될 수 있으나, 필요한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시점에서 구체적 지원 내역 및 기준 등에 대한 예상이 어려워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교육부에 따르면 '24년 현재 현장실습 선도기업에 대해서는 인력개발비(현장실습 비용) 세액공제 등의 지원이 실시되고 있음

[표 2] 현장실습 선도기업 지원 정책('24년 7월 기준)

항 목	담당부처/기관
인력개발비(현장실습 비용) 세액공제	국세청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 지원금 지원	한국장학재단
산업재해 예방시설 용자 지원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인정 인센티브	안전보건공단

항 목	담당부처/기관
시중은행 기업대출 금리 우대	신한·국민·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우대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 보험료 할인율 우대	신용보증기금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점 부여	중소벤처기업부
인적자원개발 우수 기관 인증 평가 가점 부여	한국산업인력공단
신용보증기금의 경영 컨설팅 등 수수료 우대지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일자리평가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기술보증기금

자료: 교육부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원 외에 ‘시·도교육감’이 실시하는 지원 또는 ‘직업계고등학교’ 외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습에 대한 선도기업에 대한 지원³⁾이 추가로 실시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선정기준과 절차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현시점에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게 추가될 지원내역 및 기준 등에 대한 예측 및 소요비용에 대한 추정이 곤란함
- 이에 따라 개정안은 우수 현장실습산업체에게 추가로 지원될 내역 및 그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 예측이 곤란하여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3) '24년 현재 현장실습 선도기업 지정은 직업계 고등학교의 현장실습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의 대상을 「초·중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로 규정하여 직업계고등학교 이외의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하였음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